

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 10. 22)

1. 심사 경과

- 가. 2004. 10. 4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0. 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 14호)
- 다. 2004. 10. 22 :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회계과장 장석기)

가. 제안 이유

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) 개정과 관련하여 사천시여비조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제명을 변경함
 - 사천시여비조례 ⇒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
- 2) 업무이관 및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
 - 행정자치부장관 ⇒ 중앙인사위원회
 - 예산청장 ⇒ 기획예산처장관
- 3)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명칭 정비
 -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⇒ 삭제

다. 관계 법령

- 공무원여비규정
- 관용차량관리규정,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)이 개정됨으로서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
-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사천시여비조례를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조례제명의 명료성을 위한 것이며
 - 제4조2호 및 6호의 내용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중앙인사위원회”로, “예산청장”을 “기획예산처장관”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. 4. 18 개정됨으로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
 - 제4조3호를 삭제하는 것은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2003. 7. 14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
-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을 근거로 개정되어 있어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 요지 : 원안 가결 의견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